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5. 3.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5. 3.
운영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발 의 자: 이영빈 의원 등 5명
- 발의일자: 2025. 2. 26.(수)
- 회부일자: 2025. 2. 26.(수)
- 검토기간: 2025. 2. 26.(수) ~ 3. 12.(수)

## 2.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도모하고, 윤리적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자문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자문위원회 운영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 마. 비밀엄수 의무(안 제9조)
- 바. 자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및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 자문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안 제11조)

아.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안 제12조)

#### 4. 검토의견

- 이 제정규칙안은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도록 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회의규칙으로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회는 “의원에 의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2005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sup>1)</sup>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지방의회 또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한 징계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형식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이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제65조제2항의 절차를 중시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의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

---

1) 국회는 2005년 7월 6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0년 5월 28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